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65

발의연월일: 2024. 7. 12.

발 의 자:유용원·엄태영·김은혜

이달희 · 성일종 · 김성원

조경태 · 임이자 · 박대출

정성국 · 박상웅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육군 모 부대에서 지휘관이 실시한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훈련 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은 각 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군기훈련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높은 강도의 훈련 실시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족한 탓에 가혹한 군기훈련의 실시를 방지하거나 실시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동법과 함께 「군형법」 개정을 통해 처벌 근거를 강화하고, 군인복무기본법상 군기훈련의 실시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규정 에 어긋나지 않도록 함으로 가혹행위를 방지하고 행위자의 처벌 근거 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법률 제 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훈련대상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를 "훈련대상자의"로, "한다"를 "하되, 훈련대상자의 신체상 태 및 정신상태를 고려하여 수행 역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정도의 강도 높은 군기훈련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의2(군기훈련) ① 지휘관은	제38조의2(군기훈련) ①		
군기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기			
훈련은 공개된 장소에서 <u>훈련</u>	<u>훈련</u>		
대상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u>대상자의</u>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			
하여야 <u>한다</u> .	하되, 훈련대상자의		
	신체상태 및 정신상태를 고려		
	하여 수행 역량을 현저히 초과		
	하는 정도의 강도 높은 군기훈		
	련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